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9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8. 29.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2025. 8. 2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5. 9. 10.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환경과장 최정란)

가. 개정이유

○ 검사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내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종합검사 시 군민은 지원금을 공제한 검사비만 납부하고 지원금은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형 무부하 검사 차량에 대한 지원금액의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고 승용차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혼선을 줄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보조금 지원 방법 추가(안 제4조제2항)

- 지원 방법에 협약을 맺은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일괄지급 신설

2) 지원 방법 추가에 따른 별지 서식의 개정·정비

3) 별표1 자동차 검사비 지원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맞게 세분화하여 조정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2)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3)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미반영(복지지원과-26431(2025. 7. 11.)호)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개인용)’에 신청자	☐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개인용)’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검토의견 미반영 ⇒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지원받는 주체는 차량 소유주이며, 차량 등록 시 성별 구분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자동차관리시스템에 검사 실시 여부 등이 반영되어 있어 검사비 지원 시 성별 구분이 불필요하므로 미반영함.
☐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지정정비사업자 대행 접수용)’에 신청자	☐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지정정비사업자 대행 접수용)’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지정정비사업자용)’에 신청자	☐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지정정비사업자용)’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	

4) 기 타

가)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5-1205호

- 예고기간: 2025. 7. 10. ~ 2025. 7. 30.(20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마)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호철)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통한 일괄 지급 방식을 신설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 검사 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금액을 조정하고, 승용차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혼선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3조(지원내용) 중 별표1의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액” 기준을 관련 규칙에 맞게 세분화 조정
- 안 제4조(지원절차)에 제2항 신설
 -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 체결 후, 1개월 범위내에 지원금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방법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정비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 지급 방식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줄이는 등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개정 목적 및 필요성이 타당하며,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9. 10.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